

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

- 국세청, 2024. 1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2.8.(목)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(국세행정 운영방안)을 발표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,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.

- 이날 발표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,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, 이를 위해 K-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 - 먼저, 신고서 미리채움·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*를 더욱 넓히고,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.
 - * 부가가치세·법인세 미리채움 확대, 소득세·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등
 - 그리고, 인공지능(AI) 검색*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,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(8시간 → 24시간)을 확대하고, 누적된 상담 데이터,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.
 - *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

- 또한,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.
 - 우선,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, 압류·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. 구체적으로,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(2개월) 대상*은 법인세·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(3개월)하고,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·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.
 - *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·소매·숙박·건설·제조업 등의 사업자



※ 지원대상 : ①부가세('24.1.) 128.0만 건, ②법인세('24.3.) 5.2만 건, ③소득세('24.5.) 66.7만 건

- 이와 함께, 영세사업자·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·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.

※ 지원대상(신고분) : ①부가세('24.1.) 23.0만 건, ②법인세('24.3.) 1.7만 건

- 아울러,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·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,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.

- 먼저, 미래성장 세정지원* 대상을 혁신성장·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·부품·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(11.5만 개 → 12.7만 개) 한다.

* 7개 지방청,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를 신설('23.1.)하여 R&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,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,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.2조 원('23)의 자금 유동성 지원

- 또한,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,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.

- 그리고,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,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*하는 한편,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.

* (기존)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→ (추가) 벤처기업 인증, 신성장·원천기술 심사

- 한편,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,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였다.

- 우선,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*는 지난해와 유사한 14,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, 중소·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.

* 연도별 규모(건) : ('19) 16,008 → ('20) 14,190 → ('21) 14,454 → ('22) 14,174 → ('23) 13,992(잠정)

- 하지만, 불법사채, 주가조작,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,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.

- 다만,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채납에 대해서는 압류·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.

- 또한,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*하고,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.

* 징계요구 대상 : (현행) 금품 요구 등 → (개선)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·부당한 행위 전반

- 김창기 국세청장은 "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,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"이라며,

- "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「국세행정 역량강화 TF」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"이라 하였다.
- 아울러, "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.15.(목)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,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"고 밝혔다.

I 2023년 주요 추진성과

◇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였으며,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악의적 탈세·체납 대응 강화

1 (납세지원)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 노력

- (세수 확보) 글로벌 복합위기, 국내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고지원·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부족을 최소화

<'23년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>

(단위: 조 원)

'22년 실적	'23년 예산	'23년 재추계	'23년 실적	증 감		
				'22년 실적대비	'23년 예산대비	'23년 재추계대비
384.3	388.1	333.2	335.7	△48.6	△52.4	+2.5

- (신고 지원) 세금비서* 서비스,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하여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*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

- 특히,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완료되는 모두채움 신고를 종합소득세 전체 안내 인원의 절반까지 확대('22년 497만 명 → '23년 629만 명)

2 (경제지원)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

- (피해 지원) 재해,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신고·납부기한 연장(18조), 환급금 조기 지급(17조) 등 다각적으로 지원

▸ (재해 피해) 수출 중소기업·고용위기 기업(3월) → 강릉 산불(4월) → 집중호우(7월) 등

-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성화*

* 미납국세열람 : ('20.1~'23.3) 월평균 13건 → ('23.4~) 월평균 825건(63배 ↑)

- (서민생활 안정) 고령자·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및 다문화 가정



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저소득가구를 빠짐없이* 지원

* 장려금 지급액 : ('21년 귀속) 5.0조 원 → ('22년 귀속) 5.2조 원

- 배달라이더·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349만 명에게 최근 5년간('18~'22 귀속)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8,505억 원 지급
- (성장·수출 지원) 「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(7개 지방청, 133개 세무서)」를 신설하여 혁신 성장·수출 중소기업 등에게 체계적인 세정지원* 제공
 - * 법인세·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,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,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
- 관세청·KOTRA와 MOU를 체결하여 수출기업을 함께 지원*하고, 진출기업 간담회(80회)·재외교민 설명회(6회)를 통해 세무 애로 해결
 - * (관세청) 내국세·관세 통합 세정지원, (KOTRA) 129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공동 지원
- (컨설팅 확대)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대상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고,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규모 확대

- ▶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대상: (기존) 수입금액 100 ~ 1,000억 원 → (확대) 모든 중소기업
- ▶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규모: (기존) 150개 → (확대) 189개

③ (공정과세)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악의적 탈세·체납행위 엄단

- (권익보호 강화)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기준금액 완화
 -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확대

- ▶ 조기처리 소액사건 기준금액: (기존) 3천만 원 미만 → (상향) 5천만 원 미만
- ▶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불복 청구세액: (기존) 3천만 원 이하 → (상향) 5천만 원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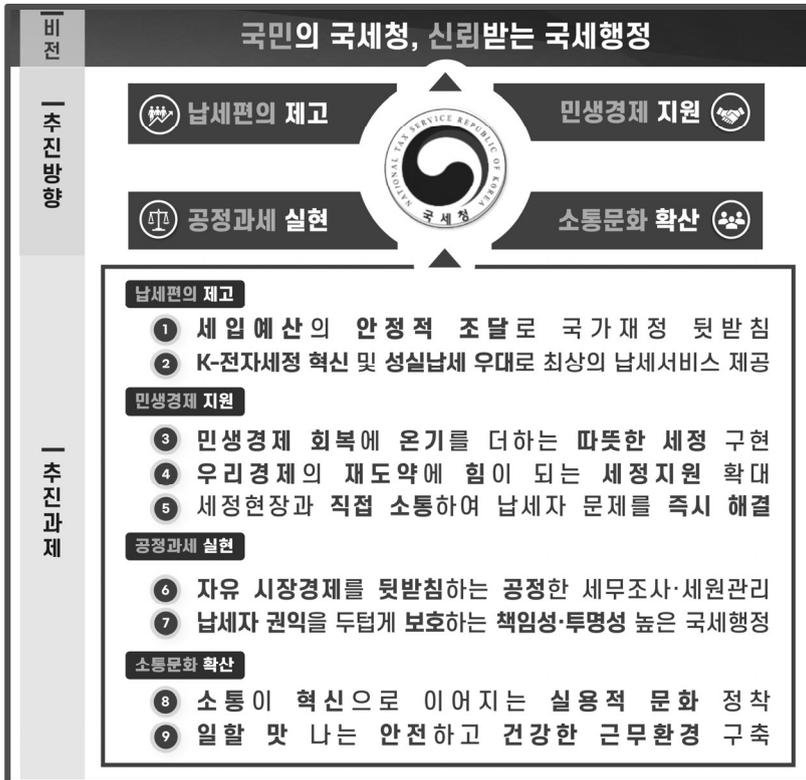
- (조사부담 완화)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,992건*까지 감축 운영
 - * 총 조사건수 : ('18) 16,306 → ('20) 14,190 → ('22) 14,174 → ('23) 13,992(잠정)
- (탈세 엄단)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, 고액학원·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, 지능적 역외 탈세, 온라인 신종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
- (체납 대응) 기획분석을 통해 변칙적 재산은닉행위를 발굴하고,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실 거주지 탐문·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
- (투명성 제고)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* 및 회계부정, 기부금 사적사용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노력
 - * 공익법인 종합안내포털 구축, 세법교실 확대 운영, 미리채움·오류알림 확대 등

II 2024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

1. 국세행정 여건

- (경제 전망)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기대되나,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
- (민생 상황)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서민생활 부담 여전
- (시장 여건) 기업투자·경영활동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필요
- (구조 변화) 인구위기, 국가채무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

2.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





2024년 핵심 추진과제

1 납세편의 제고

- ◇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, K-전자세정 혁신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국가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

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 뒷받침

가 '24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

- (세입 예산) '24년 소관 세입예산은 357.1조 원으로 '23년 세입예산 대비 △31.0조 원 감소, '23년 실적 대비 +21.4조 원 증가

'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

(단위 : 조 원)

구분	'23년 예산	'23년 실적	'24년 예산	증감	
				'23년 예산대비	'23년 실적대비
국세청 소관	388.1	335.7	357.1	△31.0	+21.4
총국세	400.5	344.1	367.3*	△33.2	+23.2

* '24년 총국세 예산 (367.3조) = 국세청 소관(357.1조) + 관세(8.9조) + 타기관농특세(1.3조)

- (세입 여건) 국내 경기는 반도체·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*될 것으로 예상되나,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

* 경제성장률 : ('23) 1.4% → ('24) 2.2% <기재부> / ('23) 1.4% → ('24) 2.1% <한국은행>

나 세수관리 및 조달노력 강화

- (상시 점검) 세수상황 점검회의(차장 주재, 매월 개최)를 통해 주요경제지표,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하여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 등 점검·관리
- (역량 집중) 주요 세목 신고도움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, 고액체납·불복 대응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

② K-전자세정 혁신 및 성실납세 우대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

가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

- (미리·모두채움)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들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줘서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·모두채움 서비스 지속 확충

'24년 새롭게 확대되는 미리·모두채움 서비스

- ▶ 부가세 미리채움 확대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매출·매입 내역 등
- ▶ 소득세 모두채움 고도화: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·인적공제 반영 등
- ▶ 법인세(중간예납) 미리채움 확대: (기존) 12월 결산법인 → (확대) 기타월말 결산법인
- ▶ 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: (기존)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 → (고도화) 일반 토지

- (모바일 신고 고도화)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*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예정

*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사용됨,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모바일 신고 건수는 홈택스 신고 대비 5%에 불과

- ▶ 이중 근로소득자, 임대·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을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
- ▶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소액 환급금 조회 및 간편 환급신고 서비스

- (연말정산 일괄제공)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
 - 청년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 추진

- ▶ (청년 안내) 월세 세액공제,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,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등
- ▶ (장애인 안내) 장애인보장구 구입비,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료 등

- (신고오류 자동검증)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*(오류발생시 팝업 안내)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검증 서비스 확대

* ①부가가치세: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대상 여부, ②소득세: 신고안내자료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입력, ③법인세: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1개 항목

나 똑똑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능형 홈택스 구현

- (홈택스 개편) 토스, 카카오뱅크 등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민간의 최신 IT서비스와 동 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



- 법정용어와 일치되는 결과만 조회되는 시스템('12년 구축)을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*를 보여주는 AI 검색으로 개편
 - * 검색어 입력 오류 보정, 일상용어 등 유사어·자연어 검색, 동영상·이미지 결과 제공 등

- (포털 개편) 840개 서비스를 148개로 통·폐합하여 직관적 포털 구축
- (화면 개선) 공급자 관점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요자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

- (안정성 강화) '전산장애 ZERO' 지속을 위해 장애예방·긴급대응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, 재해복구 시스템('15년 구축) 증설 추진

다 디지털 국세상담을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제공

- (디지털ARS 확대)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하는 디지털ARS의 상담 분야*·시간(8h → 24h)을 확대하여 전화응답률 개선 추진('23, 79% → '26, 88%)
 - * 예정보지 등 조회, 민원구비서류 문자발송, 신고 동영상 안내 등 추가
- (AI 상담 도입)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범 도입

라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로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

- (모범납세자 우대) 다자녀 납세자, 장수기업 등 선정대상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, 사회공헌납세자에 대한 훈격 상향 협의
 - 모범납세자: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,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(3.3.)에 표창 등 수여
- (세금포인트 혜택) 국민들이 성실납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(경주 등) 외식·숙박업체, 영화관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추진
 - 세금포인트: 개인·법인(중소기업)이 납부한 세금(소득세·법인세)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,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면제,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등 혜택 제공

2 민생경제 지원

- ◇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여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·투자 뒷받침 추진

③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

가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및 세무검증 부담 축소

- (세정지원 패키지)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, 압류·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
 -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(2개월) 대상은 법인세·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(3개월) 하고,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·매각을 최대 1년 유예
 - ※ 지원대상 : ①부가세('24.1.) 128.0만 건, ②법인세('24.3.) 5.2만 건, ③소득세('24.5.) 66.7만 건

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

- ▶ (건설업·제조업) 고금리,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(최소 △30%)한 개인·법인사업자
- ▶ (음식업·소매업·숙박업)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사업자

- (환급금 조기지급) 영세사업자·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·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(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)
 - ※ 지원대상(신고분) : ①부가세('24.1.) 23.0만 건, ②법인세('24.3.) 1.7만 건

환급금 조기지급 대상

- ▶ (부가세) 매출액 1,500억 이하 중소기업(3년 이상 계속사업) 및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등
- ▶ (법인세) 수출 중소기업(수출 비중 50% 이상 등),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등

- (세무검증 완화) 일자리창출·수출·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, 신고 내용 확인 등 검증 제외 대상* 추가 발굴 추진
 - * (대상) 일자리창출기업, 수출 중소기업, 투자확대 기업, 혁신·스타트업, 사회적기업 등
 -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 완화*
 - * (기존) 전년대비 10~20% 이상 투자 확대 → (개선) 전년대비 5~15% 이상 투자 확대

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촘촘한 복지세정 제공

- (장려금 지급) 자녀장려금제도 확대* 등 변경사항을 신청·심사시스템에 사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증가(+79만 가구 예상)에 차질 없이 대응
 - * (소득기준) 4천만 원 → 7천만 원 이하, (최대지급액) 80만 원 → 100만 원
 - 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·고령층·노숙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콜백*(call-back) 서비스 도입
 - * 상담량이 많아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예약 번호를 남기면 당일 내에 상담원이 연락



취약계층 맞춤형 안내

- ▶ (초년생) 알바천국·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, 신병교육대(국방부), 대학 게시판(교육부)
- ▶ (고령층) 시니어클럽 회원, 노인일자리 참여자, 임대아파트 거주 노인 등
- ▶ (노숙인) 노숙인 관련 복지시설 현황 자료 수집·활용

○ (환급금 찾아주기)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기사,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 신고 서비스의 편의성* 개선

* 여러 귀속연도를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제공

○ (물가안정 기여) 확대*되는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입산 대비 국산제품의 세금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

* 시행품목 : ('23) 승용차, 가구, 모피, 소주 등 → ('24) 캠핑용 자동차, 청주·과실주 등 발효주

- 기준판매비율 : 국산제품과 달리 수입산 제품의 세금부과 기준금액(과세표준)에는 판매이윤,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바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 차감

○ (소득자료 공유) 실시간 소득과약제도가 국정과제 「소득기반 고용보험」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추가 제공* 협의

* 교육부(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), 보건복지부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, 보험사무 간소화) 등

○ (학자금상환 지원) 상환유예 제도를 동영상·모바일 알림 등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고,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체가산금 인하 추진

* (기존)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.2% → (개선) 매월 0.5%

4]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 확대

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·투자 기업 지원

○ (지원대상 확대)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미래성장 세정지원*」 대상에 소재·부품·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추가

* (자금유동성 지원) 납부기한 연장, 환급금 조기지급,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 ('23년 7.2조 원) (경영 지원)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,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

「미래성장 세정지원」 대상 확대

기존 지원대상 (11.5만 개)	+	2024년 추가 (1.2만 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혁신성장·수출 중소기업 ▶ 신기술·신산업 중소기업 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: 원재료, 중간재, 생산설비 등 생산 ▶ 뿌리산업 분야 기업 : 공정기술, 로봇·센서 등 기술 보유

○ (전략적 세정외교) SGATAR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·투자 걸림돌 및 교민들의 세무 애로 신속* 해결

* 특히, 반도체·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

- SGATAR(Study Group on Asia-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): 아태 지역 세정협력 및 조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세청장 회의로 제53차 총회가 '24.10월 한국 개최 예정

- (글로벌최저한세 대비)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여 제도 최초 시행('24.1.1.)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 지원

- 글로벌최저한세: 해외자회사 소재국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 추가 과세권 부여 → '24년 우리나라·영국·프랑스·일본 등 50개국 시행

- (K-SUUL 수출지원) KOTRA, 해외 유통채인과 협업하여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

* ('23) 하이트·롯데 등 대형주류사 수출망 활용 → ('24) 해외 현지매장 직접판매 추진

- 막걸리 첨가물 제한, 창고면적기준 완화,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

나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 제공

- (가업승계 컨설팅)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,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향상 노력

- (시스템) 대상자·상담여부 확인, 상담내용·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화면 개발
- (사후관리)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개정사항,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요건 미충족 여부 안내

- (R&D 세액공제 사전심사)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*하고,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 전담 처리

* (기존) 「미래성장 세정지원」 대상 → (추가) 벤처기업 인증, 신성장·원천기술 심사

- (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)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간의 주요사례를 공유하고, 업무 전과정(신청접수 → 검토 → 결과통지) 시스템화

5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

- (찾아가는 세금상담) 창업지원센터·소상공인단체 등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·해소



'23년 문제해결 사례 (적극행정 우수 수상)

- ▶ 아파트 분양업자(위탁자)의 세금 체납으로 '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'이 압류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, 개정세법*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(수탁자)에 대한 설득으로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
- * 종합부동산세법 §7의2 ('20.12.개정) : 위탁자 재산으로 채권확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세금의 납부 의무 있음

- (민생·경제 소통) 민생현장·산업현장 방문,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
- ※ '23년 국세청장 현장방문 : 공주산성시장, 남동산단, 중기중앙회 등 16회

'23년 주요 개선사례

구분	건의 내용	개선 현황
민생지원소통단	▶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 명확화 (서초세무서)	법령개정 완료
산업현장 방문	▶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·감가상각비 현실화 (시화산단)	법령개정 건의
경제단체 간담회	▶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투자양도차익 비과세 (중기중앙회)	법령개정 건의

3 공정과세 실현

◇ 민생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·체납을 엄단하고, 조사·불복 전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

⑥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세무조사·세원관리

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

- (조사규모 유지)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하여 전체 세무조사 규모*를 지난해와 유사한 14,000여 건 이하로 운영
 - * 연도별 규모(건) : ('19) 16,008 → ('20) 14,190 → ('21) 14,454 → ('22) 14,174 → ('23) 13,992 (잠정)
- (조사부담 완화) 중소·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,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

조사부담 완화방안

- (절차 개선)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(15 → 20일) 전면 시행(중소 납세자 → 모든 납세자)
- (조사 유예)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연장('24.12. → '25.12.)
- (선정 제외) 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 제외 지속

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 근절

- (민생침해 척결)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,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

- 살인적 고금리, 협박·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분야
-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
-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·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분야

- 특히,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, 체납·재산추적, 유관기관(검찰·경찰·금감원) 공조 등 총력* 대응

* (주요 추진사항) ①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, ②금융조회·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, ③ 호화생활·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

- (불공정 엄단)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·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엄단

- 사주의 법인자산(별장·고가수입차) 사유화,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·사치생활
- 능력·노력·경쟁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및 불공정 사업재편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

- (역외·신종탈세 선제대응)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및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·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 사전 포착

- (역외)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 도입, 역외탈세정보 전담팀 신설 등
- (신종) 공유숙박 등록자료, 중고거래 중개자료, 유튜브 외환거래자료 등 구축

- (조사인프라 확충) 경제의 급격한 디지털화·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 및 시스템 구축

<p>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조사팀의 지원요청에 신속 대응 	<p>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비거주자 위장 혐의 검증을 위해 국내 경제활동·자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 제공 	<p>해외직구 통관자료 수집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관세청에서 공유 받는 통관 자료 확대 및 조회·분석 시스템 개발('24.5.)
---	--	---



다 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 강화 및 성실 납세자 사업재기 지원

- (고액·상습체납 근절) 과세자료 연계분석* 및 기획분석을 통해 신종투자상품,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 발굴
 - *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,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, 특허권 양도자료 등
-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('23, 19개 → '24, 25개), 지방청·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·출국금지* 등 행정제재 개선 추진
 - * (예시) 명단공개자 관련 정보 제공 확대(나이 → 생년),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(3 → 6개월)
- (사업 재기 지원)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·소상공인*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·매각 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승인
 - * (대상)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·소매·숙박·건설·제조업 등의 사업자

7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책임성·투명성 높은 국세행정

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기시정 기능 제고

- (감독기능 강화) 조사 중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확대*하고,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함을 사전안내
 - * (현행) 금품·향응 등 요구 → (개선)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·부당한 행위 전반
-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 및 참관횟수* 확대
 - * (납세자 신청기한) 조사종결 7일 전 → 3일 전까지, (참관횟수) 1회 → 2회
- (국선대리인 활성화)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고, 조세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 확보 추진

나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 강화

- (과세품질 제고)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* 의무화하고,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법령해석 기능 통합(법규과·법무과 → 법규과)
 - * 조사팀·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 →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대응
- (패소사건 환류 체계화) 파급력이 큰 중요 패소사건*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(법령·제도 개선)하고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
 - * 500억 원 이상 고액사건, 동일쟁점 선행사건, 국세기본법 관련 쟁점 등

다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및 불성실 검증 강화

- (신고 지원) 세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위해 주석표준안* 시행,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의무 통합신고시스템 구축
 - * 주석 항목별 기재사항을 간략한 표 형태로 구성하고, 작성대상·방법·예시 등 제공
- (검증 강화) 외부 회계감사의견 부적정, 특정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, 출연재산 의무지출 위반 등 신규 불성실 혐의 항목 발굴·검증*
 - * 회계부정·사적유용 등 불성실 확인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

4 소통문화 확산

◇ 관리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 혁신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

8 소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 문화 정착

가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 개선

- (업무효율 제고)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*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·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, 수동업무 자동화 등 추진
 - * (온라인) 업무개선 게시판, (오프라인) 국세청장 현장방문('23년 지방청 7회, 세무서 15회)

'23년 업무혁신 추진사례

업무총량제 도입	전산 프로세스 개선	Paper-less 세무서 구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일선 업무종류·건수 상한* 규정(3년 평균 초과 금지) * 실효성 없는 기존 업무 통합·삭제해야만 업무 신설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분산된 업무처리 화면 통합 및 일괄처리 구축 * 과세예고 화면 통합, 경정청구·증여세 일괄결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홈택스 자동접수·등록* 시스템 개발 * 모든 종이문서들이 자동등록 → 문서 편철·보관 의무해소

- (업무평가 개편) 현장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 의견 수렴·반영 절차 신설

나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립

- (청렴문화 활성화) 청렴연수원(국민권익위 산하)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MZ세대와 함께하는



청렴리더십 등 경력별·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

-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*에 따라 성실한 재산등록 지원

*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보유 제한, 재산공개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등

○ (적극행정 정착)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*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, 업무지연·부실처리 등 중점 점검하여 소극행정 근절

* 적극행정 실천시 마일리지를 부여·적립하여 포상휴가, 감사처분 감경 등에 사용

9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

가 직원의 안심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일터 조성

○ (악성민원 대응) 악성민원 발생 시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, 처리 지연 시 해당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개선

- 공무원 안심번호 전면 시행, CCTV·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 확충, 세무서 스피드게이트·전담경비인력 확대 등 직원 안전 보강

○ (근무여건 개선) 신규직원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임차합숙소 예산 확대(35 → 50억 원), 업무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 지원(1인당 5 → 8만 원) 강화

-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치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힐링캠프 및 체육·문화활동 지원 확대

나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조직·인력 관리

○ (현장직급 조정) 일선 업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직무의 책임성(직무영향·재량)·난이도(지식·기술·의사소통)에 상응하는 직급 조정 추진

'23년 추진성과: 납세자 권리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

· ①부산청 감사관·납세자보호담당관(4→3.4급),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(6→5급 14명), ③세무서 민원실 직원(7→6급 106명, 8→7급 160명, 9→8급 104명) 등

○ (승진적체 완화) 일선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국세청 인력구조에 맞는 인사 운영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인사처와 협의

※ ('23년 추진성과) 인사특례규정(대통령령)을 신설하여 근속승진 심사대상 확대

○ (교육·훈련 다양화) 신규직원의 조기적응을 위해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제공

- (체험형 교육) 새내기 마음준비, 슬기로운 세무서 생활 체험, 선배와의 대화 등
- (마이크로 러닝) 5분 이내 동영상 강의 제공 (예: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방법)

참고 - 2024년 「국세행정 역량강화 TF」 운영계획

□ 추진 배경

-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,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TF 운영계획 수립

□ 그간의 운영 경과

-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, 국세청 비전인 「국민의 국세청, 신뢰받는 국세행정」을 구현하기 위해 TF*를 신설·운영('22.7.)
 - * 분과 구성 : ①민생경제지원, ②납세불편해소, ③과세투명성·책임성강화, ④조직문화혁신
 - 추진과제 총 181건을 발굴하여 163건(90%) 추진완료('24.1월 현재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추진체계 개편) ①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, ②경제활동의 자유 지원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, 분과 명 및 분과 구성 전면 개편
- (신규과제 발굴) '23년 미완료 과제(18개)를 이관하여 지속 추진하고,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(~2.16.)
- (이행관리 강화) 전체(반기 1회)·분과(분기 1회 이상)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추가·조정, 이행방안별 실행계획 마련,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